

□ (신설)

□ 인구감소지역 내 사원용 주택  
등에 대한 감면(법§75-5, 영§35-6)

- 사원에게 임대·무상 제공용으로  
취득하는 주택·기숙사 등
  -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 
공동주택
  - 다가구 주택(전용면적이 85  
제곱미터 이하인 호수부분)
  -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  
라목1)에 따른 일반기숙사
  - 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 
취득하는 토지
- 취득세 50%

※ 조례로 25% 추가 가능
- 사후관리 규정
  - 취득일부터 1년 경과시(신축시  
해당 토지는 2년)까지 직접 사  
용하지 않는 경우
  - 직접 사용일부터 2년 미만에  
매각·증여 또는 타 용도 사용